

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4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8월 16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,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※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 기한으로 봄

2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시개발법」, 「지방재정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18. 7. 5. ~ 7. 25.) 결과: 의견 없음
- (2) 신·구 조문 대비표: 별도 붙임
- (3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별도 붙임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특별회계의 설치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9조(특별회계의 설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

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-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박 수 진 (☎2133-4656)